

2026년 제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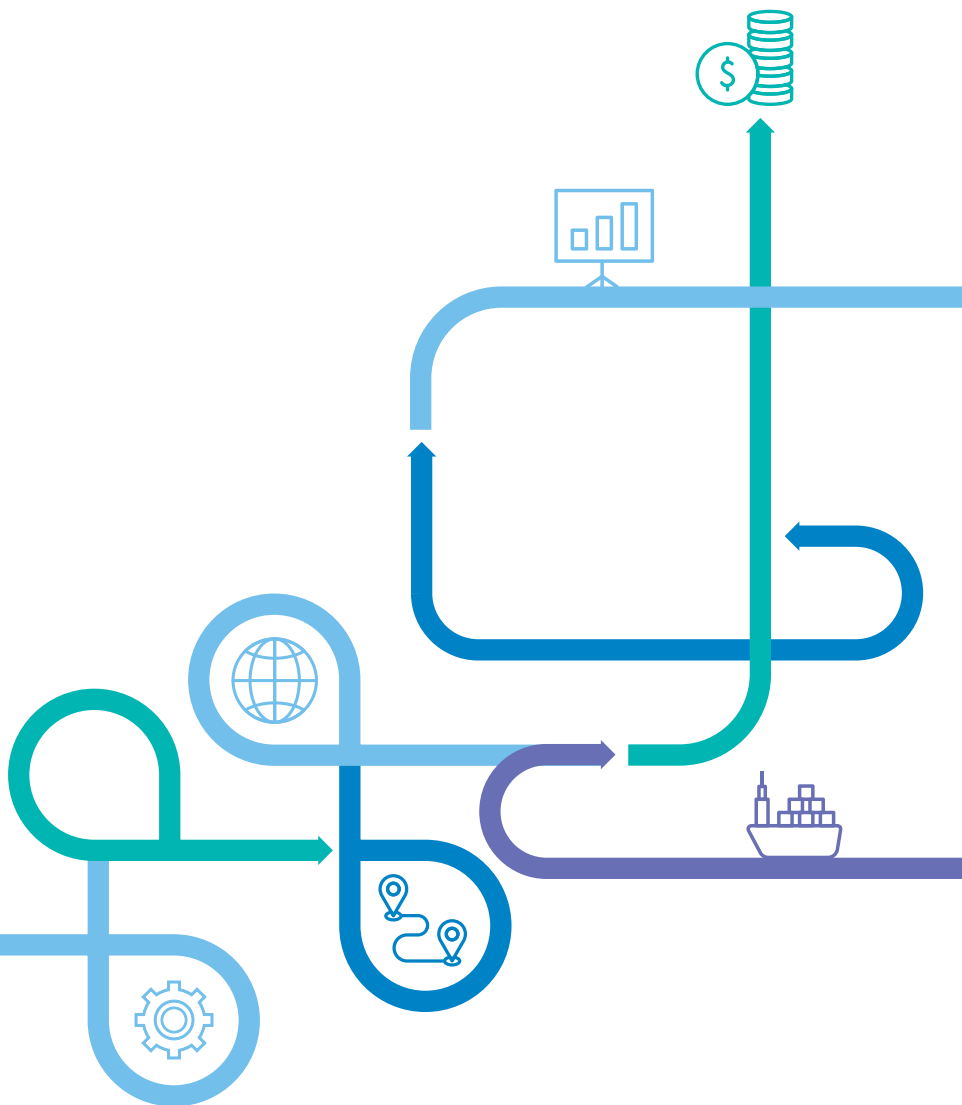
미국 CBP 사전심사 동향 분석 리포트

[미국 품목분류 판정 사례]

배터리용 철강제 큐브
페그세타코플란
핀치 볼트 요크
충전기 패키지
이동식 보관 유닛
버섯 배지
오일 추출 기계
일회용 이산화탄소 흡수기

[미국 원산지 판정 사례]

인쇄회로기판 조립체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

CONTENTS

1. 리포트 개요

2. 품목분류 판정 사례

- 2-1. 배터리용 철강제 큐브
- 2-2. 페그세타코플란
- 2-3. 핀치 볼트 요크
- 2-4. 충전기 패키지
- 2-5. 이동식 보관 유닛
- 2-6. 버섯 배지
- 2-7. 오일 추출 기계
- 2-8. 일회용 이산화탄소 흡수기

3. 원산지 판정 사례

- 3-1. 인쇄회로기판 조립체
- 3-2.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01. 리포트 개요

(1) 분석 대상

- 2026년 4월 미국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사전심사 사례 중, 품목분류 및 원산지 분야 판정문 10건을 리포트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번호	분야	품명	판정번호
1	품목분류	배터리용 철강제 큐브(Steel cube for batteries)	H356254
2		페그세타코플란(APL-2, Pegcetacoplan)	H321337
3		핀치 볼트 요크(Pinch bolt yoke)	N359979
4		충전기 패키지(Charger package assembly)	N360577
5		이동식 보관 유닛(Portable storage units)	N360308
6		버섯 배지(Mushroom substrate)	H347082
7		오일 추출 기계(Oil extraction machinery line)	N359842
8		일회용 이산화탄소 흡수기(Disposable CLIC absorber)	N359872
9	원산지	인쇄회로기판 조립체(Printed circuit board assemblies)	H344034
10		평판디스플레이 모듈(Flat panel display module)	N359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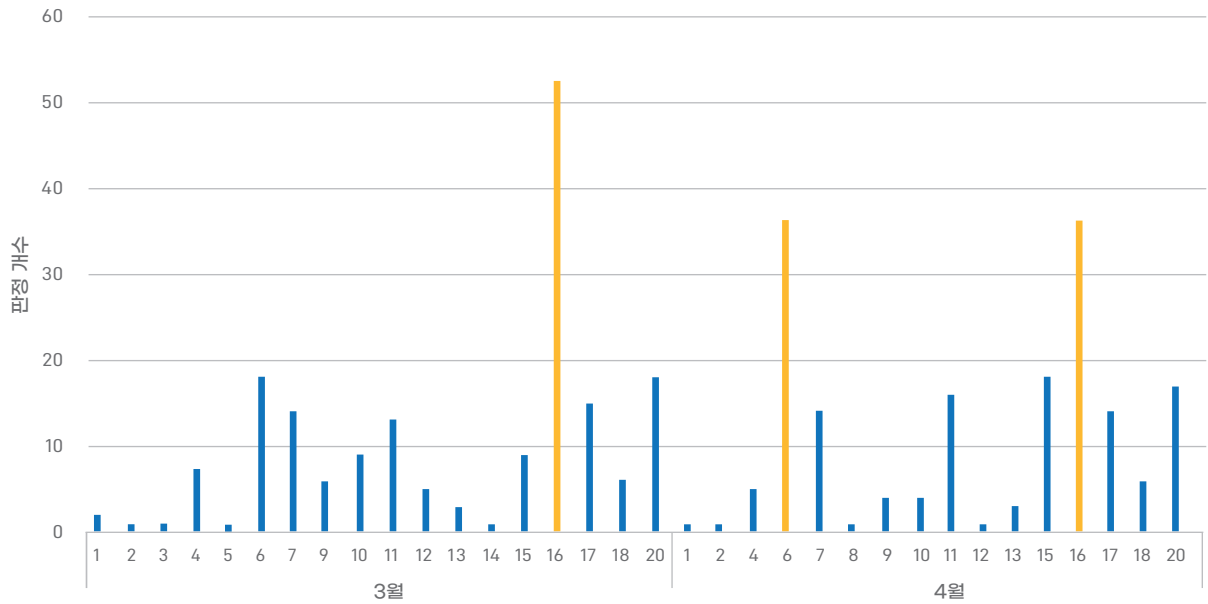
(2) 분야별 판정 현황

- CBP의 분야별 판정 건수(5월 11일 조회일 기준)는 3월 대비 4월에 품목분류와 원산지 분야 모두 변동이 거의 없으며, 전체 판정 건수는 품목분류 분야가 원산지 분야보다 약 2.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남.
 - 3월 품목분류 판정 185건 | 원산지 판정 68건
 - 4월 품목분류 판정 181건 | 원산지 판정 69건

(3) 품목별(HS 부 기준) 판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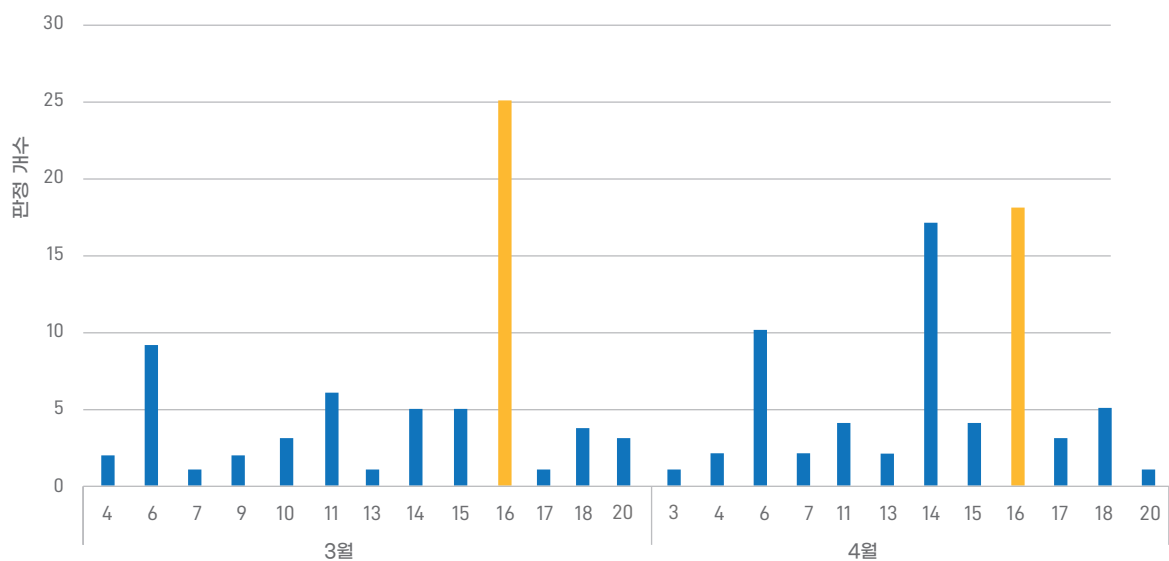
- 품목분류 분야: 4월 CBP 품목분류 판정 사례 분석 결과, 기계류(제16부), 화학공업 생산품(제6부), 그리고 비금속 제품(제15부) 등이 상위 품목군으로 확인됨.
 - 3월 제16부(기계류·전기기기), 제6부(화학공업생산품), 제20부(잡품)
 - 4월 제16부(기계류·전기기기), 제6부(화학공업생산품), 제15부(비금속과 그 제품)

〈그림 1〉 2026년 3~4월 품목별 품목분류 판정 건수



- 원산지 분야 : 4월 CBP 원산지 판정 사례 분석 결과, 기계류(제16부), 진주·귀석·귀금속(제14부) 그리고 화학공업생산물(제6부) 등이 상위 품목군으로 확인됨.
- 3월 제16부(기계류·전기기기), 제6부(화학공업생산물), 제11부(방직용 섬유제품)
- 4월 제16부(기계류·전기기기), 제14부(진주·귀석·귀금속), 제6부(화학공업생산물)

〈그림 2〉 2026년 3~4월 품목별 원산지 판정 건수





02. 품목분류 판정 사례

2-1 품목분류 CASE 1 (제85류 전기기기)

(1) 품목정보

품 명	배터리용 철강제 큐브(Steel cube for batteries)
판정번호	HQ H356254
판정일자	2026-04-14
신청국가	미국
HTSUS	8537.20.00
제품설명	• 대상물품 : 배터리 수납용으로 맞춤 제작된 철강제 큐브 • 규격 : 16피트(약 4.8미터) • 구조 : 큐브 내부에는 수십 개의 배터리를 고정할 수 있는 랙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문을 통해 개폐 가능 • 전기적 특성 : 전선, 커넥터, 소켓 등 전기 부품이 큐브에 내장되어 있음

(2) 쟁점사항

- 전기 부품이 내장된 배터리 수납용 철강제 큐브의 품목분류
- 관련 HS 코드
 - 제7309호 : 철강으로 만든 탱크 · 용기(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
 - 제8507호 : 축전지
 - 제8537호 :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

(3) 관련 규정

1) United States v. Willoughby Camera Stores, Inc., 21 C.C.P.A. 322, 324 (1933)

- 법원은 “부품(part)”의 판단 기준으로, 수입물품이 “결합될 물품이 해당 물품으로서 기능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되는 불가결한 구성요소 또는 부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시함

2) United States v. Pompeo, (Pompeo), 43 C.C.P.A. 9, 14 (1955)

- 수입물품이 다른 물품과 함께 사용하는 용도에만 전용되는 물품이고, 그러한 용도에 사용될 때 앞서 Willoughby 기준상 "부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해당 수입물품을 그 물품의 부품으로 볼 수 있음을 명시

3) 제7309호 해설

- 이 호에는 여러 가지 재료용(압축가스용이나 액화가스용 용기는 그 용적에 관계없이 제7311호에 분류한다)의 용기를 분류한다. 교반기·가열코일·냉각코일·전기식 부분품 등의 기계장치나 가열 혹은 냉각장치를 갖는 용기는 제84류나 제85류에 분류한다.

4) 제8537호 해설

-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fuse)]를 보드·패널(panel)·콘솔 등의 위에 조립한 것, 캐비닛·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또한 보통 계기를 갖추고 있으며, 때로는 변압기·진공관(valve)·전압조정기·가감저항기(rheostat)·조명용 회로망과 같은 보조기기를 갖추고 있다.
-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위치·퓨즈(fuse)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본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압연기(rolling mill)·발전소·무선국 등에 사용하는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4) 분석 및 판정

1) 제8507호(축전기) 분류 여부 판단

- 쟁점물품은 배터리를 내부에 수납할 수 있도록 맞춤 제작된 철강제 큐브로, CBP는 먼저 쟁점물품이 제8507호(축전기 및 부분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 쟁점물품에는 배터리 셀·배터리 팩·배터리 모듈과 같은 배터리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전선, 커넥터 등 일부 전기부품이 내장되어 있으나, 이들 부품은 전기에너지의 저장이나 공급과 같은 배터리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 제8507호에는 축전기 뿐만 아니라 그 부분품이 함께 분류되는데, 해설서에서는 부분품의 예시로 축전지의 용기(container)와 커버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CBP는 해설서에 명시된 용기는 음극·전극·전해질·분리판 등 내부 부품을 직접 감싸는 외부 하우징만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 따라서 CBP는 쟁점물품이 배터리 셀의 내부 구성요소를 직접 보호하는 하우징(배터리의 부분품)이 아닌, 배터리를 내부 랙에 고정하여 수납하기 위한 보관 장치에 가까운 것으로 보아, 제8507호로의 분류를 배제하였다.

2) 제7309호(철강제 용기) 분류 여부 판단

- 제7309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각종 용기가 분류된다. 그러나 동 호의 해설에 따라 전기식 부분품 등의 기계장치가 장착된 용기는 제7309호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에는 그 기능에 따라 제84류 또는 제85류로 분류하여야 한다.
- 쟁점물품에는 전선, 커넥터 등 각종 전기부품이 내장되어 있다. CBP는 이러한 전기부품의 존재로 인해 쟁점물품이 단순한 철강제 저장 용기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CBP는 쟁점물품이 제7309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제8537호(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 분류 여부 판단

- 쟁점물품이 제8507호 및 제7309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CBP는 제8537호 분류 여부를 검토하였다. 제8537호는 전기 제어 또는 배전을 위하여, 제8535호 또는 제8536호에 해당하는 기기를 2개 이상 갖춘 보드·패널·콘솔·데스크·캐비닛 및 그 밖의 기반이 분류된다.
- 제8537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보드·패널·콘솔·데스크·캐비닛 및 그 밖의 기반을 갖춘 것
 - 제8535호 또는 제8536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가 두 개 이상 조립되어 있을 것
 - 전기 배전 또는 전기 제어에 사용될 것
- CBP는 첫 번째 요건과 관련하여, 철강제 큐브 구조가 내장된 전기부품을 수용하는 캐비닛 또는 그 밖의 기반 역할을 수행한다고 판단하였다.
- 쟁점물품에 내장된 전기부품 중 터미널 블록(Terminal block)은 두 개 이상의 전선을 고정하고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전기 커넥터로서 제8536호에 해당한다. 쟁점물품에는 총 11개의 터미널 블록이 장착되어 있으므로, 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개 이상 갖추어야 한다는 두 번째 요건도 충족한다.
- CBP는 '전기 배전'을 송전 구성요소로부터 장비 네트워크를 통해 최종 사용자에게 전기를 전달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쟁점물품은 내장된 전기부품을 통해 전기가 전달되는 장비 네트워크에 해당하므로, 세 번째 요건 역시 충족한다.
- 이에 따라 CBP는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537.20.00호로 최종 결정하였다.

(5) 결론

- 본 사례의 쟁점물품은 전기부품을 내장한 배터리 수납용 철제 큐브로서, 프레임만을 갖춘 단순한 보관함과는 구별되는 품목이다.
- 제8507호(축전기 및 부분품) 해설에서는 배터리의 부분품으로 용기와 케이스를 예시하고 있으나, CBP는 이러한 용기를 배터리의 외부 하우징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였다. 쟁점물품은 내부 공간에 배터리를 수납하여 주변 환경으로부터 배터리 자체를 보호하는 물품으로, 배터리의 일부를 구성하며 내부 부품을 보호하기 위한 하우징으로 볼 수 없다.
- 최종적으로 쟁점물품은 내장된 전기부품을 통해 전기 배전 기능을 수행하는 전기기기로 판단되었으며, 제8537호(전기 배전용 캐비닛)로 분류되었다.



(1) 품목정보

품 명	페그세타코플란(APL-2, Pegcetacoplan)
판정번호	HQ H321337
판정일자	2026-04-27
신청국가	미국
HTSUS	3907.20.0000
제품설명	• 물품명 : 페그세타코플란(Pegcetacoplan) • 화학물질번호(CAS No) : 2019171-69-6 • 용도 : 희귀 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용 의약품 • 제조 : 펩타이드(Peptide 1603)와 폴리에틸렌글리콜(PEG)의 단일 화학 반응으로 생성 • 수입형태 : 순수한 고체 상태의 벌크(Bulk) 원료

(2) 쟁점사항

- 면역 질환 치료용 의약품의 품목분류
- 관련 HS 코드
 - 제3907호 : 폴리에테르·폴리에스테르
 - 제3002호 :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
 - 제3003호 : 두 가지 이상의 성분을 혼합한 의약품

(3) 관련 규정

1) 제30류 주2

- 제3002호에서 "면역물품"이란 면역과정의 조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펩티드(peptide)와 단백질에 적용된다(제2937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예: 단선향체(MAB: monoclonal antibody), 항체프라그먼트(fragment), 항체 콘쥬게이트(conjugate), 항체 프라그먼트 콘쥬게이트(fragment conjugate), 인터류킨(interleukin), 인터페론(IFN: interferon), 케모킨(chemokine), 특정한

종양괴사인자(TNF: tumor necrosis factor), 성장인자(GF: growth factor), 조혈소, 집락촉진인자(CSF: colony stimulating factor)]

2) 제30류 주3

- 혼합하지 않은 것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 (1) 혼합하지 않은 물품이 물에 용해된 것
 - (2) 제28류나 제29류의 모든 물품
 - (3) 제1302호의 단일인 식물성 추출물(extract)로서 단순히 표준화하거나 용매에 용해한 것(용매의 종류는 상관없다)
- 혼합한 것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 (1) 콜로이드 용액과 현탁액(콜로이드황은 제외한다)
 - (2) 식물성 재료의 혼합물을 처리하여 얻은 식물성 추출물(extract)
 - (3) 천연의 광천수를 증발하여 얻은 염과 농축물

3) 제29류 해설

- 이 류에는 제2936호부터 제2939호까지와 제2941호의 물품의 페그화(pegylated)[폴리에틸렌 글리콜(polyethylene glycol)(PEG) 폴리머(polymer)] 유도체도 포함한다. 이러한 페그화 유도체는 페그화하지 않은 물품과 같은 호로 분류한다. 그러나, 제29류의 다른 호로 분류하는 물품의 페그화 유도체는 제외한다(일반적으로 제3907호).

(4) 분석 및 판정

1) 제3002호(면역물품) 분류 여부 판단

- 쟁점물품은 페그세타코플란(pegcetacoplan)이라는 명칭의 의약품질로, 희귀 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활용되고 있다. 페그세타코플란은 펩타이드(Peptide 1603)와 폴리에틸렌 글리콜(PEG)의 단일 화학 반응을 통해 생성되는 물질이다.
- 신청인은 쟁점물품이 보체계(complement system)를 표적으로 하는 의약품질이므로, 면역물품이 분류되는 제3002호를 주장하였다. “보체계”란 병원체를 파괴하는 면역 작용을 돕는 혈액 내 면역 단백질의 집합체를 말한다.

- CBP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먼저 제30류 주 제2호에 규정된 면역물품의 정의를 검토하였다. 동 규정에 따르면 “면역물품”은 면역 과정의 조절에 직접 관여하는 펩타이드 및 단백질을 말한다.
- CBP는 쟁점물품이 선천적인 면역계와 상호 작용하는 물질이라는 점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쟁점물품이 면역 과정을 직접 조절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면역 과정을 직접 조절한다는 것은 신체 방어를 목적으로 생물학적 분자가 면역계를 변형하거나 제어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쟁점물품은 보체계의 단백질에 결합하여 보체계를 억제할 뿐 면역 과정을 직접 조절하는 물질이 아니다.
- 따라서 CBP는 쟁점물품이 제3002호에 분류되는 면역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제3003호(혼합의약품) 분류 여부 판단

- 신청인은 쟁점물품을 제3002호에 분류할 수 없다면, 혼합의약품이 분류되는 제3003호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쟁점물품이 제3003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의약물질을 혼합하거나, 단일 의약물질에 부형제, 감미제, 결합제 등의 보조 성분을 혼합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 신청인은 쟁점물품이 펩타이드(Peptide 1603)와 폴리에틸렌 글리콜(PEG)의 혼합으로 생성된 물질임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즉, 서로 다른 두 성분을 혼합하여 제조한 물질이므로 제3003호의 혼합의약품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이다. 또한 펩타이드는 활성 의약성분이고, PEG는 약물의 체내 반감기를 연장하여 약물의 투여 횟수와 투여량을 줄이기 위해 첨가된 것이므로, 두 성분은 서로 다른 역할의 별개의 성분에 해당한다고도 설명하였다.
- CBP는 쟁점물품은 화학적으로 연결된 펩타이드 부분과 PEG 부분 전체를 합한 물질로서, 그 조성 성분이 일정한 원소 비율로 정의되지 않고 확정적인 화학 구조식으로도 나타낼 수 없다고 보았다. 즉, 쟁점물품은 펩타이드와 PEG가 단순히 혼합된 것이 아니며, 화학 반응에 의해 페그세타코플란이라는 단일 화학물질로 제조된 물품이다.
- 또한 쟁점물품의 수입 형태는 부형제 등 보조 성분이 혼합되지 않은 순수 고체 원료이므로, 단일 의약 물질에 보조 성분을 혼합한 조제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CPB는 쟁점물품이 단일 성분의 의약물질에 해당하므로, 제3003호에 분류되는 혼합의약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제3907호(폴리에테르) 분류 여부 판단

- CBP는 쟁점물품이 제3002호 및 제3003호에서 배제됨에 따라, 제3907호 분류 여부를 검토하였다.

제3907호에는 1차 제품 형태의 그 밖의 폴리에테르가 분류되며, 폴리에테르에는 폴리에틸렌 글리콜이 포함된다.

- 쟁점물품은 Peptide 1603과 폴리에틸렌 글리콜(PEG)의 단일 화학 반응을 통해 생성되는 페그화(pegylated) 물질이다. 페그화된 물질은 화합물의 체내 반감기가 연장되기 때문에 약물의 투여량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페그화되기 이전 물질인 Peptide 1603은 제2934호(핵산과 이들의 염)에 분류되는 물품이다. 제29류 해설에 따르면, 제2936호부터 제2939호까지와 제2941호의 물품의 페그화 유도체는 이 류에 분류된다. 그러나 그 외의 다른 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페그화 유도체는 제29류에 분류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제3907호에 분류된다. 이에 따라 제2934호에 분류되는 Peptide 1603의 페그화 유도체인 쟁점물품은 제29류에서 제외되어 제3907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 CBP는 이상의 검토를 종합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그 밖의 폴리에테르가 분류되는 제3907호로 최종 결정하였다.

(5) 결론

- 본 사례에서는 세 가지 주요 쟁점이 논의되었다. 첫째, 쟁점물품이 제3002호의 면역물품에 해당하는 물질인지 여부이다. 쟁점물품은 인체의 면역 체계에 관여하는 혈액 내 단백질에 결합하여 작용한다. 이 과정에서 면역체계를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제3002호의 면역물품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둘째, 쟁점물품이 혼합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쟁점물품은 두 가지 성분(펩타이드, 폴리에틸렌 글리콜) 간의 화학 반응을 통해 제조된다. 따라서 CBP는 그 결과물이 단일한 화학적 화합물로 정의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 마지막 쟁점은 페그화된 화학물질의 품목분류 방법이다. 페그화는 펩타이드 같은 성분에 폴리에틸렌 글리콜을 화학적으로 결합시켜 약효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개선하는 기술이다. 페그화된 물질은 본래 물질이 분류되는 제29류에 함께 분류하거나, 쟁점물품과 같이 제29류가 아닌 별도의 호(대표적으로 제3907호)에 분류하기도 한다. 본 사례의 쟁점물품은 페그화로 인해 제29류에서 제외되어 제3907호로 분류되었다.

(1) 품목정보

품 명	핀치 볼트 요크(Pinch bolt yoke)
판정번호	NY N359979
판정일자	2026-04-17
신청국가	한국
HTSUS	8483.90.8040
제품설명	• 대상물품 : 원형 이어홀(earhole)이 있는 양측면과 베이스로 구성된 U자형 요크 • 용도 : 서로 다른 선상의 두 회전축을 연결하여 동력을 전달하는 유니버설 조인트의 구성 부품 • 주재질 : 철강 • 수입 형태 : 쟁점물품은 다음의 두 가지 상태로 수입 1. 완성품 : 제작이 완료된 상태 2. 미완성품 : 이어홀 등의 부분을 완성하기 위한 드릴링·기계가공 작업이 추가로 필요한 상태

(2) 쟁점사항

- 완성품 및 미완성품 상태로 수입되는 핀치 볼트 요크의 품목분류
- 관련 HS 코드
 - 제8483호 : 전동축·기어 등,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
 - 제7326호 :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3) 관련 규정

1) 통칙 제2호 가목

-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통칙 제2호 가목 해설

- (I) 통칙 제2호가목의 첫 부분은 특정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는 각 호의 범위를 확장시켜서, 완전한 물품뿐만 아니라 불완전 물품이나 미완성한 물품도 분류하도록 한다. 다만,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물품은 제시될 때에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 (II) 또한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열거하지 않은 반가공품(blanks)에도 적용한다. "반가공품(blanks)"이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예: 플라스틱(plastic)으로 만든 관 형태를 가진 병 제조용 중간성형품으로서 한쪽은 막혀있고 다른 쪽은 뚫려있다. 뚫린 쪽은 뚜껑을 돌려 닫을 수 있도록 홈이 파져 있으며 홈이 파져 있는 밑부분을 원하는 크기와 모양으로 팽창시킨 후 사용한다].

(4) 분석 및 판정

1) 미완성된 제품의 품목분류

- 쟁점물품은 공작기계, 건설기계, 자동화 장비 등의 구동장치에 사용되는 유니버설 조인트의 구성 부품으로, 양측면에 이어홀이 있는 U자 형태이며 재질은 철강이다. 쟁점물품은 완성품과 미완성품의 두 가지 상태로 수입되는데, 미완성품의 경우 이어홀 등의 부위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드릴링·기계 가공 작업을 추가로 수행하여야 한다.
- 통칙 제2호 가목은 미완성된 물품의 분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동 원칙에 따라 미완성된 물품이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은 완성된 물품과 동일한 품목번호로 분류할 수 있다.
- 통칙 제2호 가목의 해설서는 구체적으로 반가공품(blanks)의 분류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반가공품"은 직접 사용할 수는 없으나 완성된 물품의 대략적인 형상을 갖추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오직 완성된 물품으로 완성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해설서 상의 "반가공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1) 완성된 물품의 대략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출 것
 - (2) 완성된 물품으로의 완성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
- CBP는 미완성품으로 수입되는 쟁점물품이 반가공품의 분류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였다. 쟁점물품은 수입 시점에 이미 완성된 요크의 형상을 갖추고 있으며, 이어홀과 같은 일부 부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완성품인 요크로 쉽게 식별될 수 있다. 또한 쟁점물품이 유니버설 조인트에 사용되는 완성된 요크 이외의 실질적인 용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CBP는 미완성 상태의 쟁점물품이 통칙 제2호 가목이 적용되는 반가공품의 분류 요건을 충족하므로, 완성품과 동일한 호에 분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완성품의 품목분류

- 유니버설 조인트는 서로 다른 선상의 두 회전축을 연결하여 동력을 전달하는 구동계 장치로, 제8483호의 전동축·기어·커플링에 분류된다. 쟁점물품인 요크는 유니버설 조인트의 구성 부품으로, 구동축을 연결하고 고정하는 역할을 한다.
- 제8483호의 소호를 살펴보면, 제8483.60호에는 클러치와 샤프트 커플링(유니버설 조인트 포함)이 분류되고, 그 부분품은 마지막 소호인 제8483.90호에 분류된다.
- 이에 따라 CBP는 쟁점물품(미완성품 및 완성품)의 품목번호를 유니버설 조인트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483.90.8040호로 결정하였다.

(5) 결론

- 본 사례는 미완성품의 품목분류 방법을 다루고 있다. 쟁점물품은 추가적인 기계 가공을 거쳐야만 완성된 요크로 사용할 수 있는 미완성품임에도, 완성품과 동일한 품목번호로 분류될 수 있었다. 이는 수입 시점에 이미 완성품과 사실상 동일한 형상을 갖추고 있었고, 완성품으로 완성시키기 위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었기 때문이다.
- CBP는 이어홀과 같은 일부 부위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완성품과 본질적으로 다른 물품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쟁점물품이 철강제 블록과 같이 원재료에 보다 가까운 형태였다면, 완성품과 달리 재질에 따른 분류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 본 사례와 같이 반제품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완성품과 동일하게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므로, 통칙 2호 가목의 미완성품 분류 원칙을 참고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1) 품목정보

품 명	충전기 패키지(Charger package assembly)
판정번호	NY N360577
판정일자	2026-04-24
신청국가	미국
HTSUS	8517.62.0090
제품설명	• 대상물품 : 충전기, 도킹 스테이션 및 휴대용 케이스로 구성된 세트 물품 • 용도 : 이식형 신경자극기(관절염 치료용 의료기기)의 전용 충전 세트 • 구성물품 : ① 충전기 : 목에 걸어 착용하는 무선기기로, 재충전 가능한 리튬이온배터리와 블루투스 무선 송수신기를 내장 - 가정에서 신경자극기를 충전하고, 병원 방문 시 신경자극기를 프로그래밍 하는데 사용 - 프로그래머(앱)와 연동되며, 앱은 신경자극기의 배터리 잔량 등 중요 정보를 의료진에 표시 ② 도킹 스테이션 : 전원 코드를 통해 외부 전력을 공급받아 충전기를 충전하고, 거치하는 용도로 사용 ③ 휴대용 케이스 : 폴리우레탄 재질의 케이스로, 충전기와 도킹 스테이션을 수납하는 데 사용

(2) 쟁점사항

- 의료기기 충전 및 데이터 송수신 기능을 수행하는 충전기 패키지의 품목분류
- 관련 HS 코드
 - 제8504.40호 : 정지형 변환기
 - 제8517.62호 :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

(3) 관련 규정

1) 통칙 제3호 (나)

- 이 통칙 제2호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2) 통칙 제3호 (나) 해설

- (Ⅷ)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서로 다른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이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재료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
- (X)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란 다음의 요건을 갖춘 물품을 의미한다.
 - 가. 일견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예를 들면, 6개의 폰듀 포크는 이 통칙에서 의미하는 세트로 간주할 수 없다.
 - 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다.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예: 상자나 케이스 속이나 판 위에 등)

3) 제16부 주3

-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

(4) 분석 및 판정

1) 소매용 세트의 품목분류

- 쟁점물품은 충전기·도킹 스테이션·휴대용 케이스로 구성된 세트 제품으로, CBP는 통칙 제3호 (나)에 따른

소매용 세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

- 소매용 세트는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품을 기준으로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있다. CBP는 구성품 중에서 이식형 의료기기 충전 및 데이터 송수신 기능을 수행하는 충전기가 세트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다고 판단하였다.

2) 복합기계(제16부 주3)의 품목분류

- 충전기는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되는 두 가지 요소, 즉 충전 기능(제8504호)과 데이터 송수신 기능(제8517호)을 동시에 수행하는 복합기계이다. 이에 따라 CBP는 복합기계의 품목분류와 관련된 제16부 주3의 규정을 검토하였다. 동 규정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된 복합기계는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품목분류를 결정한다. 따라서 충전기의 충전 기능과 데이터 송수신 기능 중에서 주된 기능을 판단하여야 한다.
- 이에 대해 CBP는 두 기능이 동등하게 중요하며, 어느 한 기능이 다른 기능에 비해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경우에는 동등하게 고려되는 호 중 번호가 가장 마지막인 호로 분류한다. 충전 기능이 해당하는 제8504호와 데이터 송수신 기능이 해당하는 제8517호 중 번호상 마지막 호는 제8517호이다.
- 이에 따라 CBP는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데이터 송수신 기기가 분류되는 제8517.62.0090호로 최종 결정하였다.

(5) 결론

- 본 사례에서는 충전 기능과 무선 데이터 송수신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의료기기 전용 충전기의 품목분류 방법이 쟁점이 되었다. 해당 기기는 명칭상 충전기이지만, 의료기기 배터리를 충전하는 기능 뿐만 아니라 무선 통신을 통해 의료기기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각종 설정을 앱으로 제어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이처럼 쟁점물품은 서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므로, 품목분류의 기준이 될 주된 기능을 판단할 필요가 있었다.
- CBP는 두 기능이 모두 주요 기능으로서 동등한 중요성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충전 기능이 없으면 기기를 사용할 수 없고, 데이터 송수신 기능이 없으면 배터리 상태 확인이나 기기 제어가 불가능하므로, 어느 한 기능을 주된 기능으로 특정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CBP는 경합되는 호 중 순서상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호로 분류하는 예외적인 방법을 적용하였다.

(1) 품목정보

품 명	이동식 보관 유닛(Portable storage units)
판정번호	NY N360308
판정일자	2026-04-23
신청국가	미국
HTSUS	9406.90.0130
제품설명	• 대상물품 : 정육면체 형태의 철강제 이동식 보관 유닛 • 구조 : 한쪽 끝에 이중문이 부착되어 있으며, 크레인 리프트용 고리 및 지게차 포크용 포켓을 갖추고 있음 • 수입형태 : 플랫폼(flat-packed: 제품을 분해하여 평평하게 포장하는 방식) 상태로 수입된 후 미국 내에서 조립 • 운송방식 : 평상형 트럭(flatbed truck)으로 운송

(2) 쟁점사항

- 플랫폼 형태로 분해되어 운송되는 철강제 이동식 보관 유닛의 품목분류
- 관련 HS 코드
 - 제8609호 : 컨테이너
 - 제9406호 : 조립식 건축물

(3) 관련 규정

1) 제94류 주4

- 제9406호에서 "조립식 건축물"이란 공장에서 완성한 건축물이나 현장에서 조립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추어 동시에 제시되는 건축물(예: 가옥·작업현장의 숙박시설·사무실·학교·상점·창고·차고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물)을 말한다.

- 조립식 건축물은 강으로 만든 "모듈화된 빌딩 유닛"을 포함하는데, 이들은 보통 표준 선적 컨테이너에 적합한 크기와 모양으로 제시되지만 내부가 대체적으로 또는 완전하게 사전조립되어 있다. 이러한 모듈화된 빌딩 유닛은 보통 영구적인 건물을 형성하기 위해 함께 조립되도록 설계된다.

2) 제8609호(컨테이너) 호 해설

- 이러한 컨테이너[리프트밴(lift van)을 포함한다]는 하나나 그 이상의 수송방식(예: 도로·철도·해상·항공에 의한 수송)에 의한 운반용으로 특별히 설계되고 구조를 갖춘 용기(packing receptacle)이다. 이러한 것은 차량·항공기·선박에 의한 수송을 할 때에 취급상의 용이와 안전을 위하여 장착구[훅(hook)·링·카스터(caster)·받침대 등]를 갖추고 있다. 이리하여 중간에서 재포장하지 않고 화물을 "문 앞에서 문 앞까지로(door-to-door)"로 운송하는데 적합하고, 또한 튼튼한 구조로 되어 있어 반복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4) 분석 및 판정

1) 제8609호(컨테이너) 분류 여부 판단

- 쟁점물품은 건설 현장이나 작업 구역 등에서 창고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동식 보관 유닛으로, 운송의 편의를 위해 분해하여 평평하게 포장한 플랫팩(flat-packed) 형태로 수입된다.
- 신청인은 쟁점물품이 이동 가능한 컨테이너에 해당하므로 제860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CBP는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 제8609호에 분류되는 컨테이너는 주로 화물 운송을 목적으로 설계되고, 특정 운송 수단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이동이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는 컨테이너의 분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또한 CBP는 쟁점물품에 설치된 크레인 인양용 고리와 지게차 포크용 포켓이 트럭의 트레일러나 철도의 화차와 같은 특정한 운송 수단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쟁점물품은 평상형 트럭(flatbed truck)에 실려 운송되는데, 이러한 방식은 제860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수단에 의한 것이 아니다.
- 따라서 CBP는 쟁점물품이 제8609호의 컨테이너 분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해당 호에서 배제하였다.

2) 제9406호(조립식 건축물) 분류 여부 판단

- 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공장에서 완성되거나, 구성요소의 형태로 함께 제시되어 현장에서 조립되는 건물을 말한다. 제94류 주 제4호에서는 이러한 건물의 예시로 공사 현장의 숙소, 사무실 및 창고 등을 들고 있다.
- CBP는 쟁점물품이 공장에서 제작된 후 분해된 상태로 사용 장소까지 운송되고, 현장에서 다시 재조립되어 창고로 사용되기 때문에, 제9406호 조립식 건축물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CBP는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조립식 건축물이 분류되는 제9406.90.0130호로 최종 결정하였다.

(5) 결론

- 본 사례에서는 철강제 이동식 보관 유닛이 제8609호의 컨테이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이에 대해 CBP는 쟁점물품이 화물 운송을 주된 목적으로 설계되었는지 여부와, 철도 화차·트럭 트레일러 등 특정 운송 수단에 적합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 검토 결과, 쟁점물품은 현장에서 창고로 사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물품으로, 특정 운송 수단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구조를 갖추지 않았으며 평상형 트럭의 적재함에 실려 이동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CBP는 쟁점물품이 제8609호의 컨테이너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장에서 제작된 후 현장에서 재조립되는 창고로서 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1) 품목정보

품 명	버섯 배지(Mushroom substrate)
판정번호	HQ H347082
판정일자	2026-04-09
신청국가	미국
HTSUS	0602.90.50
제품설명	• 대상물품 : 물, 톱밥, 밀기울, 표고버섯 종균으로 구성된 버섯 배지 • 용도 : 식용 버섯 생산을 위한 기반 재료 • 제조방법 : ① 물, 톱밥, 밀기울을 혼합한 후 원통 형태로 압축 ② 압축한 재료를 플라스틱 백에 넣어 멸균 ③ 소량의 버섯 종균을 첨가하고, 통제된 환경에서 1.5~3개월간 배양 ④ 플라스틱 백을 제거한 후, 완성된 배지를 골판지 상자에 넣어 냉장 상태로 운송

(2) 쟁점사항

- 버섯 종균과 버섯 성장에 필요한 물질을 혼합 · 배양하여 제조한 버섯 배지의 품목분류
- 관련 HS 코드
 - 제0602호 : 그 밖의 살아 있는 식물·버섯의 종균
 - 제0709호 : 그 밖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3) 관련 규정

1) 제7류 주2

- 제0709호·제0710호·제0711호·제0712호의 "채소"에는 식용 버섯, 송로, 올리브, 케이퍼(caper), 호박류, 가지,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Zea mays var. saccharata)],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회향, 파슬리(parsley), 취어빌(chervil), 타라곤(tarragon), 크레스(cress), 스위트 마조람(sweet marjoram)[마요라나 호텐시스(Majorana hortensis)·오리가눔 마요라나(Origanum majorana)]이 포함된다.

2) 제7류 해설

- 이 류에는 신선·냉장·냉동(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찌서 조리한 것)이나 일시 보존처리나 건조(탈수·증발이나 동결건조한 것을 포함한다)시킨 채소(이 류의 주 제2호에 열거된 물품 포함)를 분류한다.

3) 제0602호 해설

-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접목용의 줄기를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수목(tree)과 관목(shrub·bush)(영림용·과수용·장식용 등)
 - (2) 모든 종류의 재배용 식물과 종묘(제0601호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한다)
 - (3) 살아 있는 식물의 뿌리
 - (4) 뿌리가 없는 꺾꽂이용 가지; 접붙임용 가지(접목이나 접순용); 덩굴과 순
 - (5) 버섯식물드레드(mushroom plant thread)[균사로 구성되어 있는 버섯종균(토양이나 식물성 물질과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분석 및 판정

1) 제0709호(신선·냉장 상태의 기타 채소) 분류 여부 판단

- 쟁점물품은 버섯 종균과 버섯 생장에 필요한 재료를 혼합하여 제조한 버섯 배지로, 식용 버섯 재배를 위한 상업적 농업에 사용된다. 버섯의 종균은 일반적인 식물의 씨앗과 같은 개념으로, 종균이 성장하면 식용 가능한 버섯의 자실체(Fruit body: 포자를 생산하여 퍼뜨리는 부분, 일반적인 모양의 버섯)를 수확할 수 있다.
- 신청인은 쟁점물품이 버섯 종균을 완전히 배양한 상태이므로, 제0709호의 신선·냉장 상태의 채소(식용 버섯 포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이 제출한 균류학자 의견서에 따르면, 종균은 세균이나 경쟁 균류에 의한 오염에 매우 취약하여 취급·보관·운송의 모든 과정에서 무균 환경이 필요한 초기 재료인 반면, 쟁점물품과 같이 배양이 완료된 배지는 종균보다 후기 단계에 해당하므로 무균 상태가 필요하지 않다. 또한 배양된 배지는 추가적인 개입 없이도 자실체를 형성할 준비가 완료된 상태로, 상업적으로도 수확 직전의 완성품으로서 거래되고 있다. 즉 쟁점물품은 "종균"으로 분류되는 물품이 아니며, 완성품인 식용 버섯에 보다 가까운 물품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 CBP는 쟁점물품이 신청인이 주장하는 식용 버섯(edible mushrooms)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식용"의 사전적 정의를 확인하였다. Merriam-Webster 사전은 "식용"을 "먹기에 적합하거나 안전한 것" 또는 "식품(food item)"으로 정의하고 있다.

- 물품은 수입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품목분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수입 당시 쟁점물품은 물, 톱밥, 밀기울, 버섯 종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자체로는 식품으로 섭취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특히 전문가의 의견서에서도 "배양 배지는 식품으로 인정되는 성숙한 자실체인 수확 버섯에서 한 단계 앞선 단계"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쟁점물품이 식용 버섯과 명확히 구분됨을 전문가 스스로 확인한 것이다.
- 따라서 쟁점물품은 제7류 주 제2호에서 정하는 "식용 버섯"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0709호로 분류될 수 없다.

2) 제0602호(그 밖의 살아 있는 식물, 버섯의 종균) 분류 여부 판단

- 제0602호 해설에 따라, 이 호에는 토양이나 식물성 물질과 혼합되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버섯 균사로 구성된 버섯 종균이 포함된다.
- 쟁점물품에는 버섯 종균의 생존과 증식에 필수적인 생장 배지를 형성하는 톱밥과 밀기울이 일체를 이루고 있다. 톱밥과 밀기울은 토양으로 볼 수는 없지만, 모두 식물에서 유래한 재료이다. 즉, 쟁점물품은 식물성 물질(톱밥 및 밀기울)과 살아있는 버섯 종균이 결합된 물품으로, 제0602호에 분류되는 버섯 종균에 해당한다.
- 이에 따라 CBP는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버섯 종균이 분류되는 제0602.90.50호로 최종 결정하였다.

(5) 결론

- 본 사례에서는 쟁점물품이 버섯 종균(제0602호)으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식용 버섯(제0709호)으로 분류되는지를 두고 신청인과 CBP의 주장이 대립하였다. 신청인은 전문가 의견서를 근거로, 쟁점물품인 버섯 배지는 사실상 수확 직전의 완성품에 해당하며, 상업적으로도 식용 버섯에 가까운 물품으로 거래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CBP는 수입 시점에 쟁점물품은 식품으로 바로 섭취하기에 적합한 상태가 아니므로, 식용 버섯과는 명백히 구분된다고 보았다.
- 쟁점물품과 같이 농산물은 생장 단계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질 수 있다. 버섯 배지는 수확할 수 있는 완전한 버섯으로 성장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며, 초기 단계에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다. 완전히 성장한 버섯은 버섯 배지와 서로 다른 품목번호로 분류되므로, 이와 같이 생장 전후 단계에서 품목분류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특정 시점의 물품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1) 품목정보

품 명	오일 추출 기계(Oil extraction machinery line)
판정번호	NY N359842
판정일자	2026-04-09
신청국가	미국
HTSUS	8479.20.0000
제품설명	• 대상물품 : 농산물(주로 땅콩)에 함유된 식물성 오일을 기계적으로 압착하여 추출하는 기계 설비 • 구성요소 : ① 쿠키(cooker) ② 원료 투입 호퍼(feed hopper) ③ 스크류 샤프트(screw shaft) ④ 압착 케이지(press cage) ⑤ 기어박스(gearbox) ⑥ 모터(motor) ⑦ 오일 잔류물 배출구(discharge outlet for oil cake) ⑧ 오일 수집 시스템(oil collection system) • 수입형태 : 각 구성요소는 설비의 크기로 인해 여러 컨테이너에 나누어 적재(단일 선적)

(2) 쟁점사항

- 구성요소가 결합하여 하나의 완성된 시스템을 이루는 오일 추출 기계의 품목분류
- 관련 HS 코드
 - 제8479.20호 :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조제용 기계류

(3) 관련 규정

1) 제16부 주4

-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2) 제16부 해설

- (VII)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 (부의 주 제4호)
 - 이 주에서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intended to contribute together to a clearly defined function)"이란 전체로서의 기능단위기계에 특유한 기능의 수행에 필수적인 기계와 기계의 조합만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계나 장치는 제외한다.

(4) 분석 및 판정

1) 기능단위기계 분류 여부 판단

- 쟁점물품은 유지를 함유한 농산물을 압착하여 식물성 오일을 추출하는 대형 설비로, 여러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 설비의 크기로 인해 각 구성품은 여러 컨테이너에 나누어 적재되지만, 단일 선적을 통해 전체 구성품이 함께 수입된다.
- 쟁점물품은 화학 용제를 사용하지 않고 기계식 압착(익스펠러) 방식으로 오일을 추출한다. 작동 방식을 살펴보면, 쿠키에서 공급된 원료는 원료 투입 호퍼를 통해, 프레스 케이지로 이송된다. 프레스 케이지의 내부에서는 기계적 압력이 점차 증가하면서 원료가 압착되고 오일이 추출된다. 추출된 오일은 케이지 개구부를 통해 수집되고, 오일의 잔류물은 별도로 배출된다.
- CBP는 쟁점물품을 이루는 각 구성품이 오일을 추출하는 기계 라인을 구성하기 위해 함께 결합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제16부 주 4호(기능단위기계)에 따라 하나의 기계가 여러 구성품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제84류 또는 제85류의 특정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면 구성품의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를 그 기능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할 수 있다.
- 쟁점물품의 모든 구성요소는 전체 설비의 기능인 오일 추출 수행에 필수적인 요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CBP는 쟁점물품이 제16부 주 4호의 기능단위기계에 해당한다고 보고, 동 규정에 따라 품목분류를 검토하였다.

2) 오일 추출 기계의 품목분류

- 제8479호에는 제84류의 다른 호에서 분류되지 않는 고유 기능을 가진 기계류가 분류된다. 제8479.20호에는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조제용 기계류가 분류되며, 쟁점물품과 같이 원료를 압착하는 방식의 오일 추출 기계도 이 소호에 해당한다.
- 이에 따라 CBP는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식물성 기름의 추출용 기계류가 분류되는 제8479.20호로 결정하였다.

(5) 결론

- 쟁점물품과 같이 여러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기계가 단일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16부 주 4호에 따른 기능단위기계 분류 규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본 사례에서는 전체 구성요소가 모두 단일 기능(오일 추출)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전체 설비가 하나의 호로 분류되었다.
- 다만 기능단위기계의 구성요소 중 보조적인 기능을 수행하거나 단일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을 수행하는 요소가 포함된 경우, 해당 요소는 그 기능에 따라 개별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 품목정보

품 명	일회용 이산화탄소 흡수기(Disposable CLIC absorber)
판정번호	NY N359872
판정일자	2026-04-01
신청국가	미국
HTSUS	8421.39.0190
제품설명	• 대상물품 : 의료용 마취기 또는 호흡 치료 장비에 사용하는 일회용 이산화탄소 흡수기 • 형태 : 이산화탄소 흡수 물질이 충전된 플라스틱 카트리지 • 용도 : 환자가 내쉬 호흡이 카트리지 내부의 흡수제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화학적으로 제거되며, 정화된 호흡 가스는 환자에게 다시 재순환 • 구조 : 전용 인터페이스(CLIC: 별도의 도구 없이 끼워서 장착하는 방식)를 갖춘 의료기기에 탈부착 가능하도록 설계
참고사진	 *사진 출처 : Draeger Medical 웹사이트

(2) 쟁점사항

- 의료기기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일회용 이산화탄소 흡수기의 품목분류
- 관련 HS 코드
 - 제8421호 :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 제9019호 :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

(3) 관련 규정

1) 제90류 주2

-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 가.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제90류·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제8548호·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
 - 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
 - 다. 그 밖의 각종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9033호로 분류한다.

2) 제9019호 해설

- 이 류의 주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총설 참조),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이 호로 분류한다. 이러한 부분품과 부속품은 산소흡입기용의 텐트와 텐트 부착구를 포함한다.

3) 제8421호 해설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

-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하며 유가물[예: 노의 연도가스로부터 회수되는 분탄·금속입자 등]을 회수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는데 사용한다[예: 가스나 연무(smoke fume)로부터의 먼지와 타르 등의 제거, 그 밖의 증기기관의 증기로부터의 기름의 제거].

(4) 분석 및 판정

1) 제9019호(치료용 호흡기기) 분류 여부 판단

- 쟁점물품은 마취 및 호흡 치료 중 환자의 호흡 가스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일회용 이산화탄소 흡수기이다. 쟁점물품은 전용 인터페이스(CLIC)를 갖춘 의료기기에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별도의 도구 없이 기기에 손쉽게 탈부착할 수 있다. 또한 카트리지 형태의 구조로, 내부에는 소다라임 등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화학물질이 밀봉되어 있다.
- 신청인은 쟁점물품이 의료기기 전용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제9019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9019호에는 산소 흡입기·인공 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가 분류되는데, 해당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도 이 호에 같이 분류될 수 있다.

- 그러나 CBP는 제90류 주 제2호에 따라 부분품이 제84류·제85류·제90류 또는 제91류의 특정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우선 분류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CBP는 각 류에서 규정하는 호 중 쟁점물품이 분류되는 호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하였다.

2) 제8421호(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분류 여부 판단

- 쟁점물품에는 기체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만을 선택적으로 흡착하는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제8421호에는 액체용 또는 기체용 여과기와 청정기가 분류되며, 이 호에는 물리식·기계식·화학식·자석식·전자식·정전식 등 모든 방식의 여과기와 청정기가 포함된다. 특히 기체용 여과기 및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데 사용되며, 화학적 방식에 의해 가스를 정화하는 여과기와 청정기도 포함한다.
- 쟁점물품은 환자의 호흡 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화학적으로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기체용 여과기 또는 청정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CBP는 쟁점물품을 제90류의 의료기기 부분품으로 분류하기에 앞서, 제84류의 제8421.39.0190호에 우선 분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5) 결론

- 본 사례에서는 일회용 이산화탄소 흡수기를 의료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쟁점물품은 단독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전용 인터페이스를 갖춘 마취·호흡 치료용 의료기기에 장착하여 사용하도록 설계된 물품이다.
- 그러나 CBP는 쟁점물품을 의료기기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이는 제90류 주2 가목에 따라, 제90류 품목의 부분품이라 하더라도 제84류의 특정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우선 분류하기 때문이다. 쟁점물품은 호흡 가스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를 화학적으로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그 기능상 제8421호의 기체용 여과기 또는 청정기에 해당하는 물품이다.
- 이는 특정 의료기기에 전용될 뿐만 아니라, 의료 목적에만 한정하여 사용되는 부분품이라 하더라도, 제84류의 특정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해당 호가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이다.



03. 원산지 판정 사례

3-1

원산지 CASE 1 (제85류 전기기기)

(1) 품목정보

품 명	인쇄회로기판 조립체(Printed circuit board assemblies)
판정번호	HQ H344034
판정일자	2026-04-08
신청국가	미국
원산지 판정	• 비특혜원산지 : 미국
제품설명	• 대상물품 : 기판 위에 다양한 전자 부품이 장착된 형태의 인쇄회로기판 조립체(PCBA) • 제조공정 : 미국, 중국, 스웨덴 및 기타 EU 국가산 부품을 미국 내에서 SMT 공정(Surface Mount Technology : 표면실장기술)과 PTH 공정(Pin-Through-Hole)을 통해 완성품으로 제작 • 소프트웨어 : 완성된 PCBA에는 스웨덴에서 개발된 독점 소프트웨어 탑재

(2) 쟁점사항

- 수입 부품을 사용하여 미국 내에서 SMT 공정 및 PTH 공정을 통해 제작한 인쇄회로기판 조립체(PCBA)의 비특혜원산지 결정 방법

(3) 분석 및 판정

1) 전공정: SMT 공정 및 PTH 공정 진행 전 필수 수행

- ① 마킹 : 추적이 가능하도록 보드에 레이저 마킹(또는 라벨 부착)
- ② 정전기 방전(ESD) 처리 : 조립체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정전기 제거
- ③ 패널 설계 : 자동화 생산 라인에서의 제조를 위한 패널 설계

2) SMT(Surface Mount Technology, 표면실장기술) 공정: 기판의 표면에 부품을 배치하고 납땜

- ① 솔더 페이스트 도포 : 부품의 전기적 연결을 위해 솔더 페이스트를 기판에 입히는 작업
- ② 디스펜싱 : 바늘형 노즐을 통해 솔더 페이스트 및 접착제를 기판 위에 점 형태로 도포
- ③ 솔더 페이스트 검사 : 솔더 페이스트의 도포 상태 검사
- ④ 부품 실장 : 기판에 부품을 장착하는 과정
- ⑤ 리플로우 솔더링 : PCB 패널을 가열 구간에 통과시켜 솔더 페이스트 내 합금이 용융되는 온도까지 가열한 후, 냉각·재응고 과정을 통해 부품 접합
- ⑥ 광학 검사 : 납땜 연결의 안정성 확인을 위해 육안으로 보이는 납땜 연결부를 카메라로 스캔 후 확인
- ⑦ X선 검사 :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납땜 연결부에 대해 X선 검사 실시

3) PTH(Pin-Through-Hole) 공정: 인쇄회로기판의 홀에 부품을 삽입하고 납땜하는 공정

- ① 솔더링 : 다음의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적용
 - 웨이브 솔더링(wave soldering) : 고정된 PCB 패널을 웨이브 솔더링 오븐에 투입하고, PCB 패널이 용융된 납의 파동 위를 통과하면서 부품 핀과 기판 패드를 일괄적으로 접합하는 공정
 - 선택적 솔더링(selective soldering) : 납땜 연결이 필요한 지점에만 선택적으로 납땜
 - 로봇 솔더링(robot soldering) : 납땜 로봇 장비를 사용하는 독립 공정
- ② 패널 분리 : 패널 형태로 함께 제조된 기판을 레이저 또는 라우터를 사용하여 개별 기판으로 분리
- ③ 검사 : 조립이 완료된 PCBA를 현미경을 사용하여 육안으로 검사

(4) 분석 및 판정

1) 실질적변형 발생 여부 판단

- 제품의 원산지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물품이 제조된 국가를 의미하며, 제3국에서 추가적인 가공이 수행되거나 재료가 투입된 경우, 해당 가공 또는 재료의 투입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초래한 경우에 한하여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 서로 다른 원산지의 부품을 조립하여 완성품을 제조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각 부품이 원래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완성품에 일체적으로 통합되었는지 여부이다. 구체적으로는 제조 결과 부품과는 다른 새로운 명칭·성질·용도를 가진 물품이 생산되었는지가 중요하다.

- 일반적으로 단순 조립 공정은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판단 요소에는 조립 작업의 성격, 조립 부품의 수, 수행된 공정의 수, 조립 시간·작업자의 숙련도 등이 있다.
- CBP는 기존 사례에서 PCB에 50개 이상의 부품(커패시터, 다이오드, 집적회로, 소켓, 커넥터 등)을 조립하는 공정이 상당한 시간·숙련도·세밀한 주의·품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실질적 변형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CBP는 외국산 부품이 전체 가치의 약 92%를 차지하는 조립품에 대해서도 공정의 복잡성, 다수 부품의 사용, 숙련된 작업 공정, 완성 후 현저한 가치 증가, 그리고 완성된 인쇄회로기판이 개별 부품과는 다른 명칭·성질·용도를 갖게 된다는 점을 근거로 실질적 변형을 인정하였다(HQ 734021, 1991).
- CBP는 본 사례에서도 SMT 및 PTH 공정이 실질적 변형을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두 공정 모두 숙련된 전문가와 특수 장비가 필요한 복잡한 작업으로 단순 조립의 범위를 넘어선다. PCB의 종류에 따라 전체 공정에는 약 22~34시간이 소요되며, 해당 분야에 전문성과 지식을 갖춘 기술자가 참여해야 한다. 공정의 최적화 및 준비 단계에서는 최소 1~2년의 경험을 보유한 기술자가 필요하고, 생산 공정은 최소 1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한 오퍼레이터가 담당한다.
- 아울러 CBP는 개별 부품들이 완제품으로 제조되는 과정에서 각각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명칭·성질·용도를 가진 물품으로 전환된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쟁점물품은 SMT 및 PTH 공정과 전용 소프트웨어 탑재를 통해 단순한 기판에서 기능성 PCBA로 전환된다.

2) 인쇄회로기판 조립체의 비특혜원산지 판단

- 미국에서 수행된 SMT 및 PTH 공정이 외국산 부품에 대하여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는 공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됨에 따라, CBP는 쟁점물품의 비특혜원산지를 미국으로 결정하였다.

(5) 결론

- 본 사례는 빈 기판 위에 각종 전자 부품을 부착하는 작업이 단순 조립 공정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실질적 변형을 구성하는지를 다루고 있다.
- 해당 작업은 SMT 공정과 PTH 공정의 두 가지 방식으로 수행된다. 미세한 전기 회로를 형성하고 소형 부품을 고밀도로 집적하는 공정의 특성상, 높은 숙련도를 갖춘 작업자와 정밀 장비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단순 조립 수준의 작업으로는 충분한 수율과 품질을 확보하기 어렵다.
- CBP는 이러한 공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작업이 통상의 조립 작업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변형을 구성하는 고도의 작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1) 품목정보

품 명	평판디스플레이 모듈(Flat panel display module)
판정번호	NY N359986
판정일자	2026-04-16
신청국가	미국
원산지 판정	• 비특혜원산지 : 대만
제품설명	• 대상물품 : LCD-TFT(Thin Film Transistor: 박막 트랜지스터) 디스플레이 모듈 • 용도 : 노트북에 결합하여 디스플레이를 구성 • 구성요소 ① TFT-LCD 패널 셀 : 색상과 화면을 표현하는 최소 구동 단위 ② IC 드라이버 : 신호를 TFT에 전달하여 픽셀을 제어하는 칩 ③ PCBA(인쇄회로기판 조립체) : 패널 구동, 전력 관리 및 백라이트 구동을 담당하는 보드 ④ FPC(연성회로기판) : 유연한 필름 위에 전기 회로를 인쇄한 기판 ⑤ 백라이트 유닛 : 패널에 빛을 공급하는 광원 장치 • 특징 : 영상 또는 데이터 처리·변환을 위한 전자 부품은 미포함

(2) 쟁점사항

- 대만산 패널 셀을 중국에서 디스플레이 모듈로 제조한 경우 비특혜원산지 결정 방법

(3) 분석 및 판정

1) 전공정(front-end process) : 대만에서 패널 셀 제조 공정 수행

- 어레이 공정(array process) : 유리 세척, 박막 증착, 포토리소그래피, 식각 작업, 픽셀 전극 형성, 전기 테스트
- 컬러 필터 공정(CF process) : 컬러 필터 코팅, RGB 패턴 형성
- 셀 공정(cell process) : 폴리이미드(PI) 세척·코팅, 경화, 정렬, 액정 주입 및 밀봉
- 터치 디스플레이 공정 : 컬러 필터 유리에 터치 센서 부착(터치 스크린 모델에 한함)

2) PCBA 제조 : 중국에서 표면실장기술(SMT) 공정을 통해 인쇄회로기판 상에 전기 부품 조립

3) 후공정(back-end process) : 중국에서 나머지 제조 공정 수행

- COG 공정(chip on glass) : 디스플레이 유리 기판 위에 반도체칩 부착
- OLB 공정(outer lead bonding) : 인쇄회로기판에 패널과 칩을 부착
- PCBA 도포 공정 : 기판 보호용 물질 도포
- 성능·품질 검사, 포장 및 선적

(4) 분석 및 판정

1) 실질적변형 발생 여부 판단

- 제품의 제조 공정이 두 국가 이상에서 수행된 경우, 해당 물품에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일으킨 최종 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결정한다.
- 실질적 변형 여부는 가공을 거친 물품이 가공 이전과 비교하여 새로운 ‘명칭’, ‘특성’ 또는 ‘용도’를 갖게 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쟁점물품의 제조 공정은 전공정과 후공정의 두 단계로 구분된다. 디스플레이의 패널 셀을 제조하는 전공정은 대만에서 수행되었으며, 인쇄회로기판 조립체(PCBA) 제조 및 최종 완제품을 조립하는 후공정은 중국에서 수행되었다.
- CBP는 대만에서 제조된 패널 셀이 최종 제품인 디스플레이 모듈의 명칭·특성·용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고 판단하였다. 중국에서의 후공정을 거쳐 완제품으로 조립되나, 해당 공정은 패널 셀 제조 단계에서 이미 결정된 제품의 명칭·특성·용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에서 수행된 후공정은 실질적 변형을 구성하지 않으며, 패널 셀과 디스플레이 모듈의 원산지는 동일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의 비특혜원산지 판단

- 중국에서 수행된 후공정이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는 공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에 따라, CBP는 쟁점물품의 비특혜원산지를 핵심 부분품인 패널 셀의 원산지(대만)로 결정하였다.

(5) 결론

- 본 사례에서 CBP는 패널 셀에 PCBA, IC 칩 등 나머지 부품을 결합하여 완성된 모듈을 제조하는 공정이 실질적 변형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PCBA 및 IC 칩이 패널 구동을 담당하는 주요 부품임에도 불구하고, 색상과 화면을 구성하는 패널 셀이 디스플레이 모듈의 명칭·성질·용도를 결정하는 핵심 부품으로 인정된 것이다.
- 디스플레이 모듈은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 중 하나로, 관련 물품의 원산지 검토 시 본 사례의 판단 기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 CBP 사전심사 동향 분석 리포트

조현기 | 연구 2파트 | 부연구위원

E-mail: chg90@kctdi.or.kr, Tel: 02-3416-5168

공하은 | 연구 2파트 | 연구원

E-mail: ghe@kctdi.or.kr, Tel: 02-3416-5165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